

2026년 제10회 원주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6년도 제10회 원주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
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29일

원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 채용 개요

가. 개요

임용분야	임용직급	임용 인원	근무 부서	직무내용
소상공인 전문상담	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	1명	경제진흥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소상공인 원스톱 365시스템 추진◦ 소상공인 A.I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◦ 소상공인 및 상인회 등 역량강화 교육◦ 소상공인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◦ 예비창업자 창업 상담 및 경영개선 컨설팅◦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
일 자리 상 담	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	1명	기업지원 일자리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◦ 구직상담(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등) 및 취업 정보 제공◦ 구인업체 발굴 및 상담◦ 취업박람회(구인구직 해피데이), 청년희망드림 버스, 취업대비 교실 등 관련 업무◦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

나. 근무기간: 최초 1년 계약

-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나, 근무실적이 저조하거나, 기관 사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(해당 사업의 폐지, 대체인력 충원 등) 근무기간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

2 근거 법령

-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
- 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

3 응시 요 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가. 일반요건

- 국 적: 대한민국
- 응시연령: 18세 이상 (2008. 12. 31. 이전 출생자)
- 지역·성별: 제한 없음(단,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)
- 결격사유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 (부정 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)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사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나. 자격 및 경력 요건

임용분야	자격·경력 요건 *
소상공인 전문상담	<p>【필수】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p>【관련분야 실무경력】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·공기업, 민간분야(대학 및 연구기관, 사기업 등) 등에서 <u>유통·물류, 광고·홍보 및 마케팅, 상권분석,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 및 경영 지원, 소상공인 대상 교육 등 관련 실무경력</u></p> <p>【우대 조건】 소상공인 창업·경영개선 컨설팅, 상권분석 등 소상공인대상 실무 경력 우대</p>
일자리 상담	<p>【필수】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<u>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u></p> <p>【관련분야 실무경력】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·공기업, 법인, 민간(사기업 포함) 등에서 <u>일자리상담 관련 실무경력</u></p>

경력증명 * 관련 유의사항

-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※ 미기재 시, 증빙자료로 불인정할 수 있음
 - 근무기간* (주당 근무시간 포함), 직위(급), 담당업무 누락 금지
- | | |
|------|---|
| 근무기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종일근무(주 40시간) 시, 경력 전부 인정 • 종일근무가 아닐 경우,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기간 산출
ex) 2년간 주20시간 경력 → 1년으로 인정 • 비상근, 프리랜서 등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입증할 자료 제출 |
|------|---|
- 발급기관 담당자 정보(소속, 직위, 성명, 연락처)를 기재하며, 발급기관 관인 날인
 - ※ 경력증명서 표준 서식 별지 참조
 - 임용분야별 기재된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일반임기제는 3년,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
 - 증빙자료는 시험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

4 근무조건 및 보수

가. 근무조건

- 근무기간: **최초 1년** * 근무실적 및 사업 지속의 필요성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여부 결정
- 기본 근무시간 등

임용분야	임용직급	상 세
소 상 공 인 전 문 상 담	시간선택제 임기제 가 급	주 35시간 * 1일 점심시간 1시간 제외 ※ 현장 여건에 따라 초과근무 실시 가능 ※ 근무장소: 원주시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(원일로 137-3 지하상가)
일 자리 상 담	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	주 35시간 * 1일 점심시간 1시간 제외 ※ 현장 여건에 따라 초과근무 실시 가능

※ 부서 사정에 따라 기본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실시할 경우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

- 복 무: 지방공무원법, 지방공무원 복무규정,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름

- 보험가입
 - 건강보험 및 공무원연금 **의무가입 대상**
 -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 시 가입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)

나. 보 수

임용분야	임용직급	연봉액 (기본연봉+기본수당)	기준 근무 시간	비 고
소 상 공 인 전 문 상 담	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	70,001천 원	주 35시간	
일 자리상담	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	39,357천 원	주 35시간	

- ▷ 임기제공무원 성과연봉은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임용 당해연도 다음 해에 지급
- ▷ 상기 연봉액은 기본연봉 및 기본수당(직급보조비·정액급식비 등) 합산액이며, 그 외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
- ▷ 기본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상 직급별 연봉하한액으로 책정

<다음 페이지에 계속>

5

시 험 방 법

가. 1차 서류심사

- 응시자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자격 및 경력요건 등 응시요건 적합여부 심사
* 적격 · 부적격 심사

나. 2차 면접시험

- 서류심사 적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면접평정 요소*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

※ 면접평정 요소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| ㉡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|
| 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| ㉣ 예의, 품행 및 성실성 |
| ㉤ 창의력,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| |

6

시 험 일 정

가.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

- 시험공고: 2026. 10. 29.(목) ~ 11. 16.(월)
- 원서접수: 2026. 11. 12.(목) ~ 11. 16.(월) *(공)휴일 제외, 평일만 접수 / 마감 후 추가·수정접수 불가
- 접수방법: 방문 혹은 등기우편 접수

【방문 접수】

- 접 수 처: 원주시청 2층 총무과 인사팀 (대리접수 가능)
- 접수시간: 평일 09:00~18:00 (11:30~13:00 제외) * **접수기간 준수**
- 시청 1층 민원담당관(6·7번창구)에서 응시수수료 수입증지 납부 후 인사팀 접수
※ 5급(호) 및 가급이상: 10,000원 6, 7급(호) 및 나, 다급: 7,000원 8, 9급(호) 및 라, 마급: 5,000원
※ 수입증지 납부 전 응시자 본인이 응시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필수

【등기우편 접수】

- 주소지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, 총무과 인사팀 (무실동) (우 26384) 채용담당자
- 등기우편 접수는 **접수마감일 빠른 등기 소인분에 한함**(택배퀵서비스 등은 접수 불가)
- **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내에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응시번호 확인 필수**
(임기제 채용 담당자: ☎ 033-737-2224)
- **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으로 교환하여 동봉**
※ 통상환증서 받을 분 기재란은 작성하지 않고 공란으로 기재하여 교환
※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심사적격자 대상으로 면접시험 당일 배부 예정

나.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: 2026. 11. 17.[화] 예정

다. 면접시험: 2026. 11. 24.[화] 이내 예정 *재공고시 변동

라. 최종합격자 발표: 면접시험 후 3일 이내

마. 임용(근무시작): 2027. 1월 중 *변동 가능

※ 유의사항

- 상기 일정은 변동가능한 예정일이며, 확정 일정은 추후 게시될 서류합격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니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▷ 원주시청 홈페이지 > 원주소식 > 시험정보 > 서류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
 - ▷ 전화, 문자 등으로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인 확인 필수
 - ▷ 원서 접수 현황, 면접위원 섭외 지연 등 부득이하게 이미 고시된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엔 응시자 또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연락 예정

7

제 출 서 류

【하단 제출서류는 스테이플러 등 사용 없이 순서대로 제출】

가. 응시원서 1부 [별지 제1호 서식]

- 응시 수수료: ※ 소상공인전문상담: 10,000원 / 일자리상담: 5,000원
※ 원주시 수입증지형태로 납부해야함,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
- 수 입 증 지: 원주시청 1층 민원과(6번 또는 7번 창구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가능 (해당되는 경우 수입증지 대신 별도 증명서 첨부)

나. 이력서 1부 [별지 제2호 서식]

-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수 / 증빙자료 없을 시, 기재 금지
- 증빙자료(경력증명서 등)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
- 첨부된 증빙자료 중 임용분야별 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력만 인정

다. 자기소개서 1부 [별지 제3호 서식]

라. 직무수행 계획서 1부 [별지 제4호 서식]

마.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[별지 제5호 서식 참조]

- 증빙자료(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)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 - 필수 기재사항 ※ 미기재 시 증빙자료로 불인정할 수 있음
 - 근무기간* (주당 근무시간 포함), 담당업무 누락 금지
- | | |
|------|---|
| 근무기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종일근무(주 40시간) 시, 경력 전부 인정• 종일근무가 아닐 경우,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기간 산출
ex) 2년간 주20시간 경력 → 1년으로 인정• 비상근, 프리랜서 등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입증할 자료 제출 |
|------|---|
- 발급기관 담당자 정보(소속, 직위, 성명, 연락처)를 기재하며, 발급기관 관인 날인
※ 경력증명서 표준 서식 별지 참조
 - 임용분야별 기재된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중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일반임기제는 3년,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
 - 증빙자료는 시험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

바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

- 경력증명 제출 서류상 근무기관과 이력이 동일해야 하며, 아닐 경우 이를 입증 가능한 증빙자료 요구 가능

사. 자격증 사본 1부

아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또는 학위취득증명서) 1부

-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·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(1년 이내 발급본에 한함)

자.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 [별지 제6호 서식]

차. 주민등록초본 각1부 [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된 것]

카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[별지 제7호 서식]

타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[별지 제8호 서식]

파. 기타 본인의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실적물 각 1부 * 선택사항

- 각종 증명서 등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 가능
-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

- 보수 및 복무는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, 「공무원 연금법」, 「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등이 적용됩니다.
- 원주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공고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 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- 원본으로 제출한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요구할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시험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한 후 시험을 진행합니다. (재공고인 경우 추가 재공고 없이 다음 시험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, 당초 응시자는 별도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점수의 효력 인정)
- 면접시험 불합격 등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인원 만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상 기재착오 및 누락·미비, 응시자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추후 안내하는 면접등록 시간까지 면접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등록기간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임기제공무원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라 영리업무가 금지되며,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영리·비영리 업무에 종사하시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무 담당부서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본 공고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하며,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총무과 인사팀 채용담당자(☎ 033-737-2224)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 끝.